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주권상장법인”을 “주권상장법인인 계열회사(계열회사가 아닌 회사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이었던 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30(계열회사 간 합병의)”를 “10(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)”으로, “10”을 “3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주권상장법인과”를 “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주권비상장법인”을 “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주권상장법인인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(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제외한다)

제17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료”를 “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한 자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외부평가기관이 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
⑭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(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)를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한다.

⑮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.

1.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
2. 합병가액의 적정성
3.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
4.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
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176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이전(「상법」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을 “이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3항”을 “제15항”으로 한다.

3. 「상법」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와 「상법」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비상장법인으로 되지 않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합병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6조의5(합병의 요건·방법 등) ① <u>주권상장법인이</u>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. 1.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(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산술평균한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기준시가”라 한다)을 기준으로 100분의 <u>30(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</u>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.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	제176조의5(합병의 요건·방법 등) ① <u>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(계열회사가 아닌 회사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이었던 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</u>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<u>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</u> ---. ----- 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0(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----- 30-----.

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
균하여 산정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⑥ 삭제

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
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
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
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
받아야 한다.

1. 주권상장법인(기업인수목적
회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호
및 제2호에서 같다)이 주권상
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

가.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
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
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
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
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
정하는 경우

나.·다. (생략)

2.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계열회
사인 주권상장법인과 -----

<삭제>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계열회사인

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~ 다. (생략)

3. (생략)

<신설>

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⑨·⑩ (생략)

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신설>

1. ~ 4. (생략)

주권비상장법인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4.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(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제외한다)

⑧ ----- 자료
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한 자료 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⑨·⑩ (현행과 같음)

⑪ -----

-----.

1. 외부평가기관이 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

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⑫ · ⑬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76조의6(영업양수·양도 등의
요건·방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
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
양수·양도, 같은 항 제3호에
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, 포괄

⑫ · ⑬ (현행과 같음)

⑭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
합병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
(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
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)를
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한다.

⑮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
합병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
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
성하고 이에 각각 서명해야 한
다.

1.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

2. 합병가액의 적정성

3.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
정성

4.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
는 경우 그 사유

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
여 고시하는 사항

제176조의6(영업양수·양도 등의
요건·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
적 이전(「상법」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·양도 가액,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,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(제176조의5제9항·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)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-- 이전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상법」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와 「상법」 제360조의15에

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·양도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,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·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1항부터 <u>제13항</u>까지를 준용한다.	<u>다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비상장법인으로 되지 않는 경우</u>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5항</u>----- -----.
---	---